

보도 일시	2023. 2. 16.(목) 12:00 <2. 17.(금) 조간>	배포 일시	2023. 2. 16.(목) 08:30
담당 부서	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선종규 (044-200-4300)
	경쟁정책국 디지털조사분석과	책임자	과 장 이지훈 (044-200-4681)
	조직선진화추진단	책임자	과 장 김문식 (044-200-4311)

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- 적법절차 원칙 강화, 정책/조사 기능 완전 분리 -

■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사건처리 절차·기준 정비, 사건처리 역량 강화,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「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
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·기준을 정비한다.

- 조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**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***히 하고,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**조사·심의 제도를 정비****한다.

* 조사공문 구체화, 자료제출 관련 이의제기절차 신설,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

**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, 변론기회 확대, 자기사건 조회시스템 개편

-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**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**을 구축한다.

* 장기·시효임박 사건에 대한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 마련,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, 단순 질서위반 사건 지자체 이양

②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한다.

-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**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**하고,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**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내부교육도 강화**한다.

③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**조직을 개편**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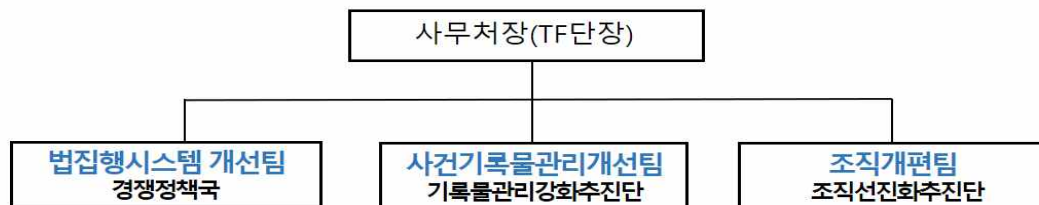
- **조사·정책 부서를 분리**하여 사건처리의 책임성·전문성을 제고하고, 심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**조사·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**을 강화한다.

1

추진 배경 및 경과

- 국민과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하여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.
 - 그간 조사·심의 과정에서의 절차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구제 강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 - 또한,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전문성 등 내부역량을 한층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.
 - 대통령께서도 공정위 법집행에 있어 예측가능성·투명성 강화, 증거 자료 보존·관리 및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, 조사·정책·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지시('22.8월 업무보고 時)한 바 있으며,
 - 1월 업무보고 시에도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화 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.
- 그간 공정위는 ‘법집행 혁신·조직개편 TF(단장: 사무처장)’를 구성하고,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였다.
 - 작년 8월부터 내부 TF를 구성하여 그간 학계·법조계·경제계 등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였으며,
 - 특히, 사건기록 관리 및 조직개편 과제의 경우 별도 팀(기록물관리 강화추진단, 조직선진화추진단)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.

< 통합TF (법집행 혁신·조직개편 TF) 체계도 >



- 또한, 작년 9월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·공개 토론회 등 충분한 외부 의견수렴 및 추가 건의사항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.

1. 사건처리 절차 · 기준 정비

- ① 조사권 행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한다.
- (조사공문 구체화)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범위반혐의 관련 ▲거래분야·유형, ▲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지한다.
 - 거래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 조사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.
 - 아울러, 기본적으로 공문에 기재된 기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하도록 한다.
 - (이의제기 절차 신설)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.
 - 현장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임의 제출하였다 하더라도, 그 이후 피조사기업에게 제출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.
 - 피조사기업은 반환·폐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가 아닌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.
 - (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) 조사 편의를 위해 CP팀·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
 - 준법지원 부서가 범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②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·심의 제도를 정비한다.

- (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) 기초사실·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(국과장)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.
- 예비의견청취 실시대상은, 既마련되어 있는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청취 절차 실시대상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방어권 보장 및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건*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.

*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,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 등

- (변론기회 확대)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사건(사건의 규모·성격 등 고려)에 대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.
- (사건조회기능 개선) 피조사기업·신고인이 사건담당자·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‘자기사건 조회시스템’도 개편한다.

③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.

- (장기사건 집중관리) 장기·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(관리·주의·경보 단계)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,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.
- (민사분쟁 사건 등 Fast-track 활성화)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하여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* 활성화를 통해 조기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.

* 기업 준법활동(CP) 지원, 분쟁조정 강화, 동의의결 활성화 등

- 아울러,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행위*는 사건처리 및 조치(과태료 부과)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.

* (가맹분야) 정보공개서·가맹계약서 미제공,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행위 등
(대리점분야) 계약서 미교부·미서명·미보존행위 등

2. 사건처리 역량 강화

①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한다.

- (부서장 차원의 기록물 관리 강화) 부서장이 기록물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·결재하고, 임의 제출자료 등도 편철을 의무화하여 자료 누락을 방지한다.
- (기록물 편철시스템 개선) 전자적 방식의 편철(CD, USB 등 보관)을 확대하고, 조사자료 외 심의자료 기록 관리 강화, 편철 매뉴얼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.

②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혁신 등 내부교육도 강화한다.

- (교육 프로그램 혁신) 단편적인 조사방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조사 절차 준수, 기록물 관리, 심의대응 등 법집행 **순단계별 교육**으로 확대한다.
- (교육 기회 확대) 교육 횟수·컨텐츠를 확대하고 외부 조사전문 교육 기관에 위원회 직원 교육 파견도 추진한다.

3. 조직개편

① (조사-정책 부서 분리) 조사-정책 기능별 책임성·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-정책 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- 現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하여,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, ^{가칭}조사관리관(1급 신설)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*할 예정이다.

* 사건절차규칙, 조사절차규칙, 위임전결규정 등 사건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사무처장이 조사관리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



② (조사-심판 분리 운영 강화) 심결의 독립성·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-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.

-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,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.

3

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□ 금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공정위 법집행의 **예측가능성** 및 **효율성**·**전문성**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.

- 공정위 **조사권 행사**의 **내용과 한계**를 **명확**히 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.

- 특히,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개선 기회를 확대하는 등 **글로벌 스탠다드**에 맞게 절차를 **보강**하여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- 또한,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**장기사건 감축** 등 **피해구제**를 **강화**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**예측가능성**도 높아질 수 있게 하였다.

- 아울러, 절차 보강과 사건처리 신속화는 동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기록 관리 고도화, 조사역량 강화, 조직개편 등 **효율성·전문성** 제고 방안도 마련하였다.

□ 공정위는 **올해 상반기** 조사절차규칙,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**조속히 시행**할 계획이다.

- 또한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**조직개편**도 **올해 상반기까지 완료**할 계획이다.

□ 이를 통해, 법집행의 **예측가능성**과 **효율성**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-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법집행의 **예측가능성**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<별첨> ‘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’

